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2023. 4.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28
----------	-------

2023. 4. 4.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차해영 의원 외 9명
- 나. 제 안 일 : 2023년 3월 17일
- 다. 회 부 일 : 2023년 3월 22일

2. 제안이유

채식환경 조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만성질환 발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제안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국민의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마.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바. 채식생활 권장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식생활교육지원법」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타

○ 입법예고 : 2023. 3. 17.~ 3. 21.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육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채소·과일의 하루 권장 섭취량(400g)¹⁾에 비해 부족한 채소·과일의 섭취를 장려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됨.

나. 주요 조문 사항

- 본 제정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기본방향과 채식환경의 현황 및 분석,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을 포함 하고 있음. 다만, 기본계획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고 자치사무로서의 기본계획 내실화를 위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행 여부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발굴 및 교육, 홍보 콘텐츠 개

1) “채소·과일, 질병 예방하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리얼푸드 매거진, 2022.12.30.)
<http://www.realfoods.co.kr/view.php?ud=20221230000065&pg=1&ret=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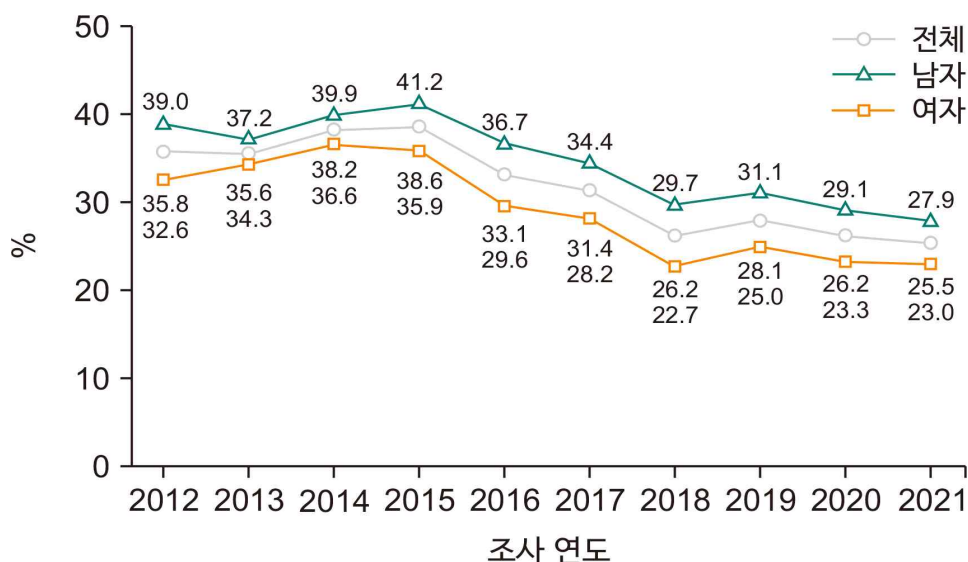
밭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채식의 날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5년 국제 채식인 연맹이 제정한 ‘세계 채식인 날’을 모티브로 하여 채식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 것임. 이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 차원의 채식 실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현대 사회는 늘어나는 육류 소비로 인해 만성 질환 및 질병 등의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등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증명하듯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성인의 과일과 채소의 1일 섭취 권장량을 400g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1. 하루 과일 및 채소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추이(만6세이상)>²⁾



2) 2021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knhanes.kdca.go.kr/>

- 그림 1.에서는 하루 과일 및 채소 섭취량 500g 이상인 비율이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2년 35.8%에서 2021년 25.5%로 약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채식환경 조성으로 인한 채식주의 식단은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 차원의 건강상 이점과, 육류보다 생산의 더 적은 자원이 소요되기에 환경적 이점, 동물 농업을 둘러싼 윤리적 차원의 동물 복지 증진에 장점이 있지만, 육류 중심 식단의 사람들에게는 식사의 제한 사항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며 채식의 날 운영은 상황에 따라 음식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인종별, 국가별에 따라 문화적 규범에 무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하지만,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류 소비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세계적 시대 흐름에 맞춰 채식 실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그 시의성은 인정됨.
- 또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채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기엔 국민의 체감도가 다소 낮기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등에서 ‘채식의 날’을 시행하는 등 조례 제정 이후 채식 실천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겠음.

<표 1. 채식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1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2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중구, 전라남도 곡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 현재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62곳의 채식음식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먹거리 정보지도 배포사업으로 홍보

하고 있음. 조례 제정 후 더 많은 홍보 콘텐츠 개발로 홍보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하겠음.

<그림 2.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먹거리 정보지도(채식음식점)>



- 아울러, 채식과 관련된 상위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와 관련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 관련 자치사무로 판단됨으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내실성 있는 채식권 보장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관 계 법 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